

삼성 당신을위한리서치주식혼합종류형자 투자신탁 제 1 호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삼성 당신을위한 리서치주식혼합종류형자투자신탁 제1호”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거하여 ‘삼성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가 작성한 자료입니다. 이 투자설명서는 당해 투자신탁의 투자에 따른 위험, 주된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투자방침, 가입방법, 투자금 회수 방법, 관련 보수 및 수수료, 과세 등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가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삼성투신운용

SAMSUNG

삼성 당신을 위한 리서치주식혼합종류형자투자신탁 제1호

투 자 신탁 명	삼성 당신을 위한 리서치주식혼합종류형자투자신탁 제1호 (자산운용협회 펀드코드 : 69523)
자 산 운 용 회 사 명	삼성투자신탁운용(주)
판매회사명 및 상담가능 전화번호	- 삼성증권(주) (☎ 1588-2323, www.samsungfn.com) 판매회사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거하여 제정된 판매행위준칙 등을 준수합니다. ※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업무 만을 영위할 뿐 투자신탁의 운용과는 무관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장하거나 손실을 보전하지 않습니다.
작 성 기 준 일	2008년 04월 03일
투자설명서 비치· 공시 장소 및 인터넷 게시주소	판매회사 본 · 지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삼성투자신탁운용(주) 인터넷 홈페이지(www.samsungfund.com), 자산운용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amak.or.kr)

금융감독위원회는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을 승인하거나 투자설명서 내용의 정확성 및 적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CONTENTS

요약(핵심설명서) : 이 펀드의 주요 특징만을 파악하고 싶다면?

제1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 : 이 펀드의 기본정보를 알고 싶다면?

- 1. 투자신탁의 개요
명칭,상품의 존속기간, 투자신탁유형, 자산운용회사, 최초설정일 등 연혁,
수탁고 추이, 해지사유
- 2. 투자정보
투자목적, 주요 투자전략, 주요 투자위험,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기준가격, 운용전문인력, 투자실적(연도별 수익률 추이, 연평균 수익률)
- 3. 수수료·보수, 과세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 4.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분배
매입, 환매, 이익 등의 분배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 이 펀드를 상세하게 알고 싶다면?

- 1.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투자전략, 투자위험, 투자대상, 투자제한
- 2. 자산의 평가
자산의 평가
- 3. 투자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 선정기준
투자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 선정기준
- 4.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및 이익 등의 분배관련 유의사항
수익증권의 매입관련 유의사항, 수익증권의 환매관련 유의사항, 이익 등의
분배관련 유의사항

제3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

이 펀드의 운용회사, 판매회사, 수탁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채권평가회사를 알고 싶다면?

- 1. 자산운용회사
회사 개요, 주요업무,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운용자산규모,
운용전문인력관련 사항
- 2. 판매회사
회사 개요, 주요업무

- 3. 수탁회사
회사 개요, 주요업무
- 4. 일반사무관리회사
회사 개요, 주요업무
- 5. 채권평가회사
회사 개요, 주요업무

제4부 수익자의 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 투자자의 권리와 공시제도에 대해 알고 싶다면?

- 1. 수익자의 권리
수익자 총회 및 의결권, 잔여재산분배,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손해배상책임, 재판관할,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2. 공시
정기공시 및 보고서, 수시공시

제5부.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 1. 신탁계약기간.....
- 2. 분류
- 3. 자산운용회사.....
- 4. 최초설정일 등 연혁.....
- 5. 주된투자권유대상.....
- 6. 모투자신탁의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
- 7. 투자전략.....
- 8. 투자대상.....
- 9. 투자제한.....
- 10.투자실적 추이.....
- 11.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12.수익자총회에 관한 사항.....

<참고> 용어 정리 : 투자설명서에 나온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 <참고> 펀드 용어 정리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상품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상품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계약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요약(핵심설명서)

I 투자신탁의 개요(☞본문 4 쪽)

1. 명 칭 : 삼성 당신을위한리서치주식혼합종류형자투자신탁 제1호
2. 신탁계약기간 :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해지일까지
3. 분 류 : 증권투자신탁, 혼합형·추가형·종류형,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4. 자산운용회사 : 삼성투자신탁운용(주)

II 투자정보(☞본문 4~5 쪽)

구 분	주요내용
1. 투자목적	- 이 투자신탁은 법 제 140 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투자신탁임. - 주식, 채권, 파생상품 및 유동성자산에 대한 투자로 자본소득 및 이자소득을 추구 - 다만,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음
2. 주요 투자전략	- 투자신탁재산의 40%이상 80%이하를 리서치를 바탕으로 예상 주가상승률이 가장 높은 주식 종목에 투자하는 주식형모투자신탁에 투자하며, 나머지 자산은 국채, 통안채 등에 투자하는 채권형 모투자신탁에 투자
3. 주요 투자위험	-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주식 및 채권의 가격변동에 따라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유형	- 이 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은 5 등급 중 2 등급으로 높은 수준임 - 따라서 리서치를 바탕으로 예상 주가상승률이 가장 높은 주식 종목투자하여 투자수익을 실현시키기를 원하는 투자자에게 적합
5. 기준가격	- 수익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 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를 발행 수익증권 총수로 나누어 매일 산출 - 판매회사 영업점 또는 자산운용회사 인터넷 홈페이지(www.kitmc.com)에서 확인 가능

6. 운용전문인력

성명	나이 (년생)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간 접투자기구수	다른 운용 자산규모	
이동식	1964	본부장	6 개	4,089 억	- 고려대학원 경영학 - 87.09 ~ 96.12 동양증권, 동양투자금융 - 97.01 ~ 00.02 에셋코리아
정 준	1973	선임	6 개	2,971 억	- 99.02 한양대 경제학 석사 - 98.08 ~ 03.10 현대투신증권 - 03.10 ~ 05.12 국민은행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LT 주식운용본부 및 채권2 팀이 담당하며, 상기인들은 이 투자신탁을 총괄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7. 투자실적 추이(연평균 수익률) : 해당사항 없음

III 매입·환매관련 정보(☞본문 6~10 쪽)

1. 수수료 및 보수

구 분		지급비율(연간, %)			
		A클래스	C클래스	Cw클래스	
종 류		A클래스	C클래스	Cw클래스	
수익증권 판매 기준		제한없음	제한없음	Wrap계좌용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선취판매수수료 ¹⁾	납입금액의 0.7%	-	-	
	환매수수료 ¹⁾		30 일미만 : 이익금의 70% 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50%		
투자신탁에 부과 되는 보수 및 비용	보수	운용회사보수	연 0.54%	연 0.54%	연 0.54%
		판매회사보수	연 0.66%	연 1.26%	연 0.00%
		수탁회사보수	연 0.03%	연 0.03%	연 0.03%
		보수합계	연 1.23%	연 1.83%	연 0.57%
	기타비용 ²⁾	실비	실비	실비	
총보수·비용비율 ³⁾		연 1.23%+ 실비	연 1.83%+ 실비	연 0.57%+ 실비	

주 1) 선취수수료 매입시점에서, 환매수수료는 30 일미만, 90 일미만 환매시 일회적으로 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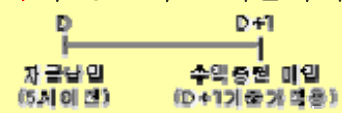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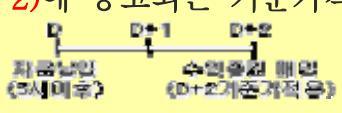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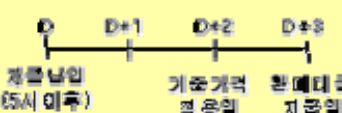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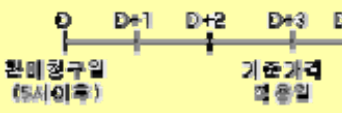
2) 기타비용은 유가증권 매매거래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임

3) 총보수·비용비율은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전체적인 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냄

2. 과세 : 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 등(2008.06. 현재 개인 15.4%, 법인 14.0%)을 부담**합니다.

3. 매입·환매절차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의 영업시간(오전 시~오후 시 분) 중에 매입 또는 환매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오후 5시 이전	오후 5시 이후
매 입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의 다음 영업일(D+1)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 3 영업일(D+2)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환 매	-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 3 영업일(D+2)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제 4 영업일(D+3) 에 환매대금을 지급 	-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 4 영업일(D+3)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제 5 영업일(D+4) 에 환매대금을 지급 

※ 의문사항 또는 불편사항(민원)이 있는 경우 **판매회사의 상담센터()**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거나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핵심설명서)’은 투자설명서의 주요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투자위험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투자설명서 본문을 읽어보셔야 합니다. (판매회사)_____ (점포명)_____ (판매직원/취득권유인 직위 및 성명)_____ (은)는 (고객 성명)_____에게 투자설명서를 교부하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200 . . .
판매직원/취득권유인 _____서명 또는 (인)

제1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

I. 투자신탁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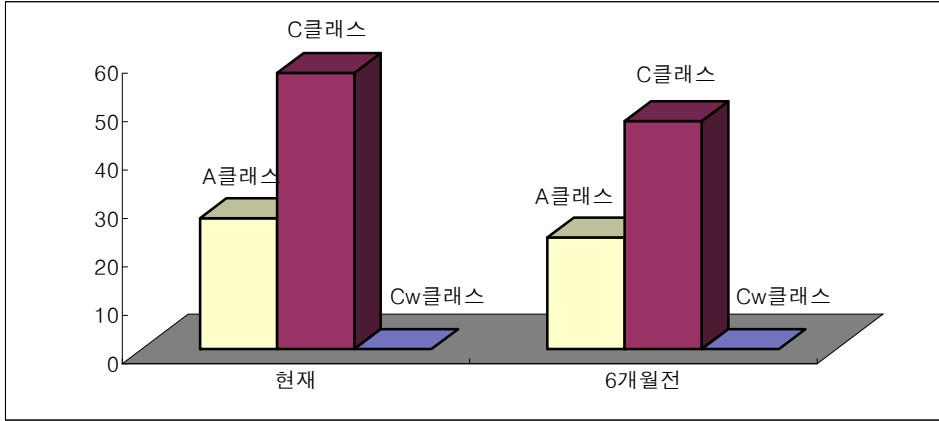
1. 명 칭	삼성 당신을 위한 리서치주식혼합종류형자투자신탁 제1호 (자산운용협회 펀드코드 : 69523)
2. 펀드존속기간	이 상품은 추가형 상품으로 종료일이 따로 없습니다.
3. 분 류	증권투자신탁(혼합형), 추가형, 개방형, 모자형 <div style="text-align: center;"> <pre> graph TD A[삼성 리서치주식모 투자신탁] --- B[삼성당신을위한리서치주식혼합종류형자투자신탁 제1호] C[삼성강국코리아단기채권 모투자신탁] --- B B --- D[종류형 구조] B --- E[A클래스] B --- F[C클래스] B --- G[Cw클래스] D --- H[종류별 가입조건] E --- I[제한없음] F --- J[제한없음] G --- K[Wrap계좌용] </pre> </div>
4. 자산운용회사	삼성투자신탁운용(주)
5. 최초설정일 등 연혁	2007년 05월 29일 투자신탁 설정
6. 수탁고 추이	(단위 : 억원, %)

연도	현재 (’08.03.31)	6개월전 (’07.10.01)	1년전	1년6개월전	2년전	2년6개월전	3년전
수탁고금액	84	70					
수탁고증가율	20.9	-					

※수탁고 증가율은 6개월 전 수탁고 대비 증가율임.

□ 종류별 수탁고 추이

연도	현재 (’08.03.31)	6개월전 (’07.10.01)	1년전	1년6개월전	2년전	2년6개월전	3년전
A클래스	27	23					
C클래스	57	47					
Cw클래스	-	-					



7. 해지사유

자산운용회사는 공익 또는 수익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2) 1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 (3)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

II. 투자정보

1. 투자목적

주식 및 채권등에 투자하여 투자대상의 가격 상승에 따른 투자수익 추구

이 투자신탁은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유가증권(주식,채권), 부동산자산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여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수익추구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비교지수 = KOSPI * 0.6 + KOBII20 *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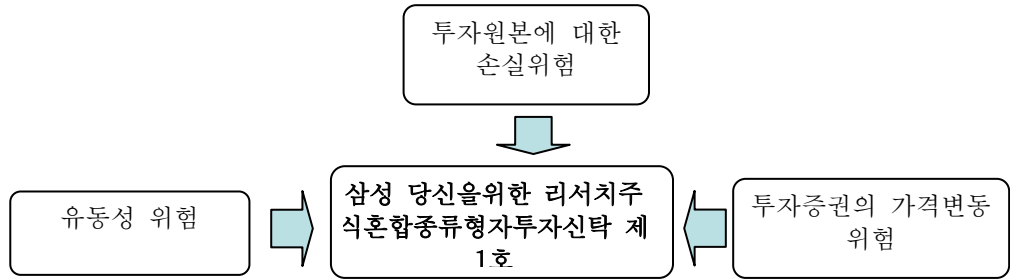
2. 주요 투자전략

리서치를 바탕으로 주가상승 여력이 큰 주식 종목 및 국내 채권에 투자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40%이상 80%이하를 리서치를 바탕으로 주가상승 여력이 큰 주식 종목을 선별·집중 투자하는 삼성 리서치주식모투자신탁에 투자하며, 나머지 자산은 국채, 통안채 및 우량 은행채등에 투자하는 삼성 강국코리아단기채권모투자신탁에 투자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3. 주요투자위험



(1)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 위험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수익증권이 판매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2)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위험

투자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증권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3) 유동성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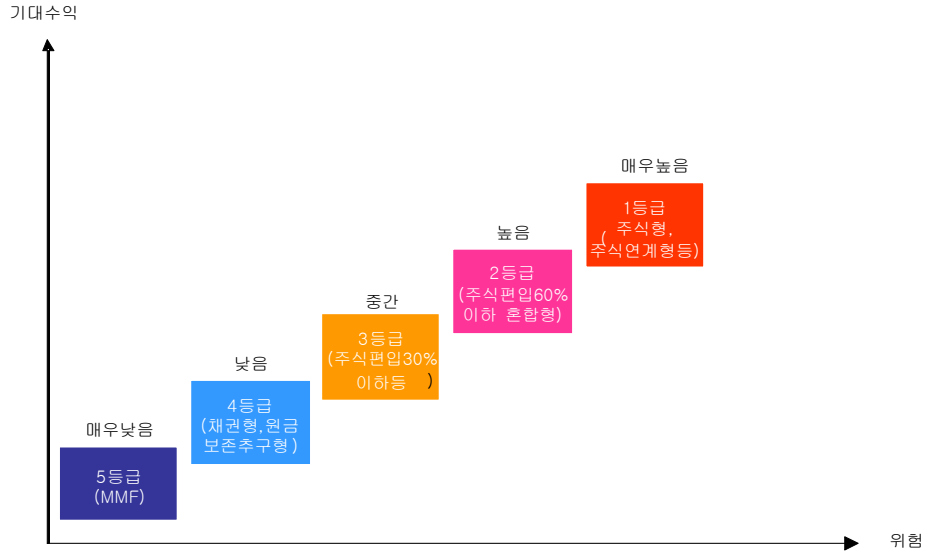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투자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투자위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I.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중 '2. 투자위험'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이자소득 및 자본이득을 추구하는 혼합형투자신탁으로 5등급 중 2등급에 해당되는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에 투자하여 안정성을 추구하면서 신탁재산의 일부분을 주가상승 여력이 큰 주식 종목에 투자하여 동 주식시장 상승의 부분을 투자수익으로 실현시키고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투자위험등급기준]



5. 기준가격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p>당일의 공고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p>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기준가격 산정주기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포함]은 매일 산정하며, 보수, 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별로 기준가격이 다릅니다.
기준가격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판매회사 영업점, 운용회사 (www.samsungfund.com)· 판매회사(www.samsungfn.com)· 자산운용협회(www.amak.or.kr) 인터넷홈페이지에 공시

6. 운용전문인력

성명	직위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이동식	본부장	- 고려대학원 경영학 - 87.09 ~ 90.03 동양증권 - 90.04 ~ 26.12 동양투자금융 - 97.01 ~ 00.02 에셋코리아
정 준	선임	- 99.02 한양대 경제학 석사 - 98.08 ~ 03.10 현대투신증권 채권운용 - 03.10 ~ 05.12 국민은행 채권운용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LT주식운용본부 및 채권2팀에서 담당하며, 상기인들은 이 투자신탁을 총괄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 책임 운용전문인력이 현재 운용중인 다른 간접투자기구의 수와 운용자산 규모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3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의 '1. 자산운용회사' 중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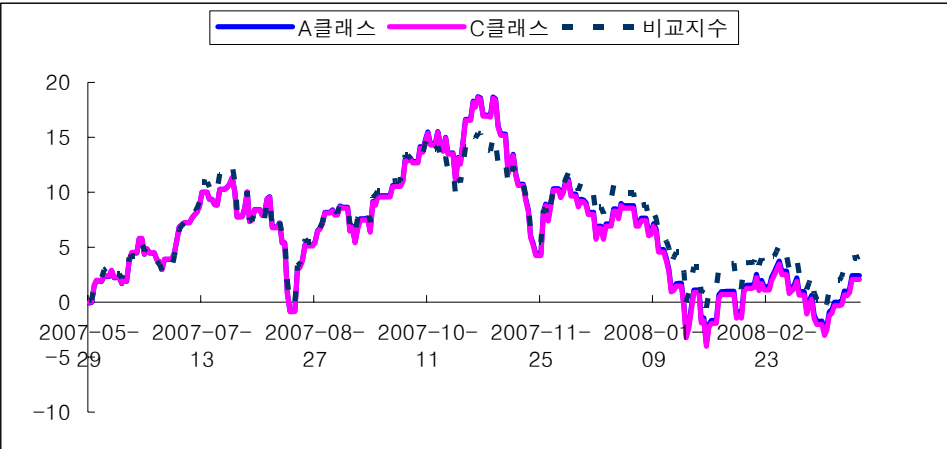
7. 투자실적 추이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성적을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자산운용협회 (<http://www.amak.or.kr>) 전자공시사이트에 게시된 이 투자신탁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

기간	최근 1년 ('07.05.29 ~ '08.03.31)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07.05.29 ~ '08.03.31)
A클래스	2.42%	-	-	-	2.42%
C클래스	2.07%	-	-	-	2.07%
Cw클래스	-	-	-	-	-
비교지수	4.17%	-	-	-	4.17%

※ 비교지수 : KOSPI * 0.6 + KOB1120 * 0.4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기간	1년차 (‘07.05.29~ ‘08.03.31)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A클래스	2.42%	-	-	-	-
C클래스	2.07%	-	-	-	-
Cw클래스	-	-	-	-	-
비교지수	4.17%	-	-	-	-

※ 비교지수 : KOSPI * 0.6 + KOSDAQ * 0.4

Ⅲ. 수수료·보수, 과세

1.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종류	A클래스	C클래스	Cw클래스	지급시기
선취 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7%	-	-	매입시
환매수수료	-	30일미만: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미만: 이익금의 50%		환매시

2.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순자산총액의 연 %)			비고 (지급시기)
	A클래스	C클래스	Cw클래스	
운용회사 보수	0.54%	0.54%	0.54%	매 3개월 후급
판매회사 보수	0.66%	1.26%	0.00%	
수탁회사 보수	0.03%	0.03%	0.03%	
일반사무관리 보수	-	-	-	사유 발생시
기타비용	0.01%	0.01%	0.01%	
총보수·비용비율	1.24%	1.84%	0.58%	

註) 1. 기타비용은 유가증권 매매거래비용 등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예상수치**입니다.
 2.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비용>

1. 투자증권등의 매매수수료
2. 투자증권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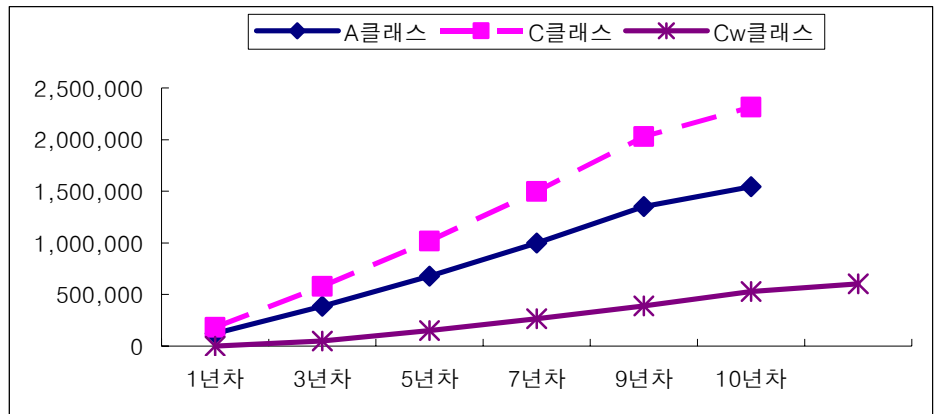
- 7. 투자증권등의 가격정보비용
-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 9.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등에 소요되는 비용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 · 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 : 원)

투자기간	1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A클래스	112,760	387,001	678,326	1,544,062
선취수수료 : 1,000만원 X 0.7% = 7만원				
C클래스	184,000	580,060	1,016,716	2,314,332
Cw클래스	48,000	151,320	265,230	603,7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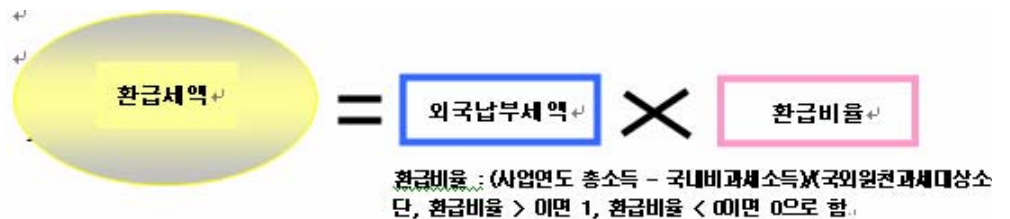
- 註) 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수를 산출한 것입니다.
 2.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이익금의 재투자 여부,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별도의 세금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신탁에서 납부한 채권 등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모두 환급을 받고 있으며,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펀드가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권거래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 또는 계약을 연장하는 날에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의 과세상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채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 6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거주자에 한하여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도 수익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상장주식 등에 대한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국내외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이 채권이자, 주식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 (나) 2007년 6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외국상장주식의 평가 이익보다 2007년 6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외국상장주식의 평가 손실이 더 큰 경우

※ 2007년 6월 1일 이전 가입한 수익자에 한하여 2007년 6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외국상장주식 평가 이익부분은 수익자의 과세대상 이익에 포함)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최고한도 세율 35%)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최고 한도세율 25%)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IV.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및 이익의 분배

1. 매입

(1) 매입 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매입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 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합니다.

(2) 매입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가) 17 시[오후 5 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에 발표하는 수익증권 기준가격 적용
- (나) 17 시[오후 5 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 (다)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 원으로 합니다.

	(제1영업일)	(제2영업일)	(제3영업일)
17시[오후5시] 이전에 납입시	자금납입일	기준가격적용일 수익증권 교부일	
17시[오후5시] 경과 후에 납입시	자금납입일		기준가격적용일 수익증권 교부일

- 주1) 간접투자증권 매입청구의 취소(정정)는 당일 17시[오후 5시]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 주2)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처리합니다.

※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관련 추가적인 사항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IV.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1. 매입관련 유의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2) 환매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가) 17시[오후 5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 3 영업일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 4 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 (나) 17시[오후 5시]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 4 영업일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 5 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제1영업일)	(제2영업일)	(제3영업일)	(제4영업일)	(5영업일)
17시[오후5시] 이전 납입시	환매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금지급일	
17시[오후5시] 경과후 납입시	환매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금지급일

- 주1) 간접투자증권 매입청구의 취소(정정)는 당일 17시[오후 5시]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 주2)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처리합니다.

※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관련 추가적인 사항은 ‘제 2 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IV.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2. 환매관련 유의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환매수수료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금액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합니다.

환매수수료는 30 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30 일 이상 90 일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50%입니다.

(4)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에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3. 이익 등의 분배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 및 당해 종류별 수익증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분배관련 추가적인 사항은 ‘제 2 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IV.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3. 분배관련 유의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I.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1.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40%이상 80%이하를 리서치를 바탕으로 주가상승 여력이 큰 주식 종목을 선별·집중 투자하는 **삼성 리서치주식모투자신탁**에 투자하며, 나머지 자산은 국채, 통안채 및 우량 은행채등에 투자하는 **삼성 강국코리아단기채권모투자신탁**에 투자합니다.

※ 모투자신탁의 주요투자전략

□ 삼성 리서치주식모투자신탁

- (1) 철저한 Fundamental Research에 바탕을 둔 투자를 원칙으로 합니다.
- (2)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차별화된 Research 및 Risk 관리

□ 삼성 강국코리아단기채권모투자신탁

- 편입대상 채권을 국공채 및 우량 은행채등으로 한정하여 크레딧 리스크 최소화합니다.

※ 모자형의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투자설명서 ‘제5부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자산운용회사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투자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동성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투자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환매연기위험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감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① 모투자신탁	40%이상 80%이하	○ 삼성 리서치주식모투자신탁에 투자
	60%이하	○ 삼성 강국코리아단기채권모투자신탁에 투자
②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 예치	10%이하	○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 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 다만, 자산운용회사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대응하여 자산운용회사가 환매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모투자신탁의 환매대금 지급일정의 차이로 인하여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의 비율이 일시적으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다음의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④ 및 ⑤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①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 ②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 월간 ③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④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⑤ 투자신탁재산인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위의 ① 및 ②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주) 1. 투자대상별 투자비율은 신탁재산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출

4. 투자제한

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 제외
단기대출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자산운용회사의 이해관계인(법 시행령 제77조 적용)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투자한도 초과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위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투자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점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
------------	---

II. 자산의 평가, 기준가격산정 및 공시

1. 자산평가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산의 종류별 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의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상장주식	평가 기준일에 거래소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 회계법인,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발표하는 가격
장외파생상품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방식으로 산정된 가격으로 평가. 단, ELW의 경우 발행회사에서 제공하는 가격으로 평가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대상채권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일 10일 이상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비상장채권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상장채권 중 대상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포함
외화표시 유가증권인 상장주식 및 상장채권	그 유가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유가증권시장의 최종시가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외화표시자산을 한국원화로 환산하는 환율	평가일에 외국환중개회사에서 고시하는 최근 거래일의 매매기준율 또는 최종시가. 외국환중개회사가 매매기준율 또는 최종시가 고시전에 미리 고시한 환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율을 사용하여 평가 가능. 단, 외국환중개회사로부터 관련 환율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평가회사로부터 제공된 환율정보 이용 가능

Ⅲ. 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구분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투자증권의 거래	<input type="checkbox"/> 평가 항목 중개거래 시장점유율, 거래관련 자격보유여부, 조직 및 인력현황, 리서치 서비스의 질, 감독기관 제재 및 시정조치 내역, 결제안정성, 시장정보 제공능력, 매매체결의 신속성, 거래관련 보안유지 능력, 세미나 개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개회사를 선정합니다.
장내파생상품 거래	<input type="checkbox"/> 선정방법 평가방법을 Manager, Analyst, Trader 등 중개사와 업무적으로 관련 있는 담당자들이 분기 1회 이상 배점방식에 의해 평가항목별 점수를 평가하여 중개회사를 선정합니다.

Ⅳ.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1. 매입관련 유의 사항

- (1) 수익증권은 판매회사의 영업시간 중 영업점에서 매입할 수 있습니다.
- (2) 수익증권의 매입가격은 투자자가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자금을 판매회사에 납입한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환매관련 유의 사항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직접 환매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수탁회사에 직접 청구가 가능합니다.

(1)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다음의 경우 수익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17시 경과 후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전전전영업일)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2)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신탁약관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 ①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②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① 또는 ②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 구체적인 사유는 약관 제 26 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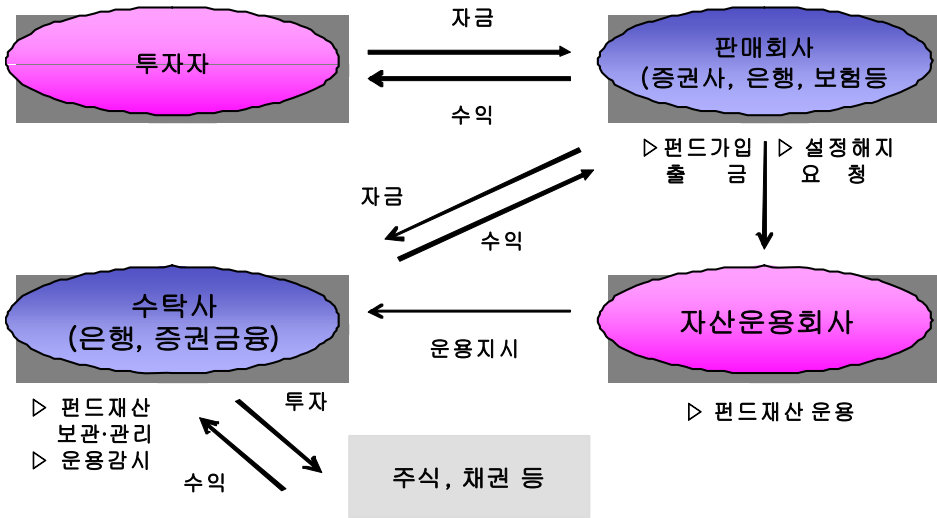
(3)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 ①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상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할 수 있습니다.
- ② 수익자총회에서 부분환매가 결정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부분환매를 결정한 날(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한 경우에는 그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합니다.
- ③ ②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한 경우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합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권의 보유좌수에 따라 별도의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3. 분배관련 유의 사항

- 가.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분배금을 받을 수 있으며,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나. 상환금등의 지급시기
상환금등의 지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환금등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기간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유가증권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다. 수익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게 귀속됩니다.

제3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I. 자산운용회사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 삼성투자신탁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6-1 삼성생명 여의도빌딩 3층
 (02-3774-7600)

회 사 연 혁

일자	연혁
1998. 9	삼성생명투신운용설립 (납입자본금 300억원)
1999.12	舊 삼성투신운용 흡수 합병(납입자본금 632억)
2000.03	자본금 300억 유상증자 (납입자본금 932억)
03	삼성생명투자신탁운용에서 삼성투자신탁운용으로 상호 변경
2001.01	업계 수탁고 1위 달성
04	수탁고 20조 달성
11	연기금 투자플 주간 운용사 선정
2002.10	국내 최초 상장지수투자신탁 KODEX200 증권거래소 상장
2003.10	관리자산 50조원
2004.12	관리자산 60조원
2005.04	ABF 펀드 설정(아시아채권펀드의 한국내 운용사로 선정)
11	연기금투자플 주간운용사 재선정
2007.03	관리자산 74조원

2. 주요업무

(1)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헤지/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2) 자산운용회사의 의무와 책임

① 선관의무 :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간접투자

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② 책임 :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산운용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③ 연대책임 :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3. 최근 2개 사업연도의 요약 재무내용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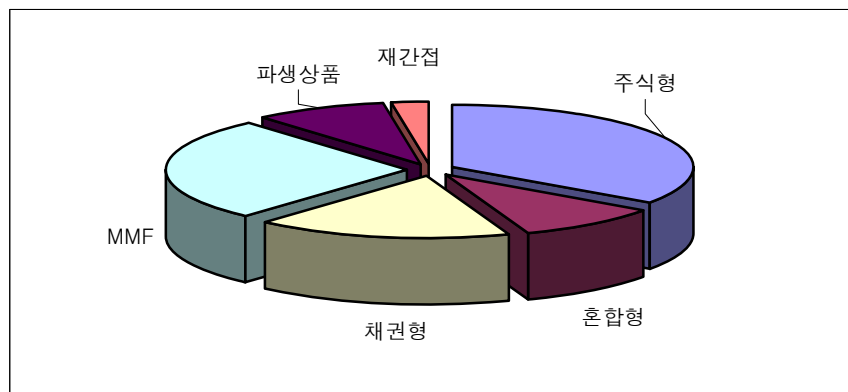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항 목	'06.3.31	'05.3.31	항 목	'06.3.31	'05.3.31
유동자산	117,291	100,850	영업수익	64,794	57,404
고정자산	37,797	38,264	영업비용	33,536	32,512
자산총계	155,088	139,115	영업이익	31,258	24,892
유동부채	7,437	5,667	영업외수익	128	989
고정부채	2,301	1,381	영업외비용	25	28
부채총계	9,738	7,047	경상이익	31,361	25,853
자본금	93,180	93,180	특별이익	-	-
이익잉여금	52,170	38,887	특별손실	-	-
자본조정	-	-	세전순이익	31,361	25,853
자본총계	145,350	132,067	당기순이익	22,601	17,946

4. 운용자산규모

(2008년 03월 31일 기준, 억좌)

종 류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MMF	파생상품	특별자산	재간접	실물자산	총 계
수탁고	73,370	20,065	36,369	56,573	18,706	-	5,469	-	210,552

※ 연기금 및 자문 제외



5. 운용전문인력(펀드매니저)에 관한 사항

성명	나이 (년생)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비고
			운용중인 다른 간접투자 기구 수	다른 운용 자산 규모		
이동식	1964	본부장	6 개	13,785 억	- 고려대학원 경영학 - 87.09 ~ 90.03 동양증권 - 90.04 ~ 96.12 동양투자금융 - 97.01 ~ 00.02 에셋코리아	LT 주식 운용팀에 서 운용
정준	1973	선임	6 개	2,971 억	- 99.02 한양대 경 제학 석사 - 98.08 ~ 03.10 현대투신증권 - 03.10 ~ 05.12 국민은행	채권 2 팀 에서 담 당

* 사정에 따라 펀드매니저가 교체될 수 있습니다.

II. 판매회사

1. 회사의 개요

판매회사	주소 및 연락처	연혁
삼성증권(주)	서울시 종로구 종로2가 6번지 종로타워빌딩 (☎ : 1588-2323)	www.samsungfn.com 참조

2. 주요업무

(1) 주요업무

- 수익증권 판매업무(수익증권의 모집 및 매출업무)·환매업무
- 수익증권 교부업무 /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지급업무와 원천징수업무
- 각종 장부·서류 등의 비치, 수익자 앞 제공 및 공고 업무 등 기타 법령 및 신탁약관에서 규정한 사항

(2) 판매회사의 의무 및 책임

- ① 의무
 - 판매회사는 투자자에게 수익증권의 취득을 권유함에 있어 동 투자설명서를 제공하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 판매회사의 임직원 및 취득권유인은 법제57조에 의거하여 제정된 판매행위준칙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② 책임 : 판매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

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판매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산운용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③ 연대책임 :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Ⅲ. 수탁회사

1. 회사의 개요

수탁회사명	하나은행(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101-1 (☎1588-1111)	
회사연혁	1971. 6	한국투자금융(주) 설립
	1991. 7	은행으로 전환
	1998.10	중청하나은행 출범
	1999. 1	합병 하나은행 출범
	2002.12	서울은행과 통합

2. 주요업무

(1) 주요업무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간접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등

(2) 수탁회사의 의무 및 책임

① 의무

- 수탁회사 간접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신탁약관,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지시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수탁회사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신탁약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간접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자산운용회사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② 책임 : 수탁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수탁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산운용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③ 연대책임 :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

회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IV.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V.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1. 채권평가회사의 개요

회 사 명	KIS 채권평가(주)	한국채권평가(주)	나이스채권평가(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 도동 35-4 한국화재 보험협회 건물 4층 (Tel : 3215-1491)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11 광화문빌딩 9층 (Tel : 399-335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 도동 15번지 한섬빌 딩 6층 (Tel : 398-3900)
회사연혁	2000.06.20 설립	2000.05.29 설립	2000.06 설립

2. 주요 업무내용

-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 간접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VI.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4부. 수익자의 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I. 수익자의 권리

1. 수익자 총회 및 의결권

(1) 수익자총회의 구성 및 권한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 총회를 둡니다. 이때,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 수익자총회는 수탁회사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의 요청으로 자산운용회사가 소집하며 자산운용회사의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 소집합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의 회의일 전일까지 자산운용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수익자총회 의결사항

-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증권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수탁회사의 변경 /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자산운용회사의 영업양도 /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2. 잔여재산분배

- 자산운용회사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수탁회사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며,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등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자산운용회사사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에 관한 사항

- 수익자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대하여 영업시간 내에 당해 수익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간접투자재산명세서
 - (2) 간접투자증권기준가격대장
 - (3)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4) 자산매매거래내역서

4. 손해배상책임

-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자산운용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합니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5. 재판관할

-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이 투자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6.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신탁약관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등은 자산운용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자산운용협회 인터넷(www.amak.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공시

1. 정기공시 및 보고서

자산운용회사는 다음의 사항을 매 영업연도의 결산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건전성·수익성 및 생산성 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자산운용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1) 영업보고서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 분기 종료 후 20 일까지 이를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회사의 자본변동상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합니다)이 기재된 서류

(2) 자산운용보고서

자산운용회사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탁회사의 확인을 받아 3 월에 1 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 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우송하여야 하나, 간접 투자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자산 운용보고서를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수탁회사보고서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후 2 월 이내에 법에서 규정한 수탁회사 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4) 약관변경

- 신탁약관의 내용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증권예탁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1)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2) 수탁회사의 변경
 - (3)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5) 자산운용회사의 영업양도
 - (6)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7)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자산운용회사는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한 모든 수익자에의 통지
 -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고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 : 신탁약관 제 51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 및 컴퓨터통신을 통한 1 회 이상 공고

신탁약관 제 49 조제 2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탁약관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의 영업점포내에 1 월 이상 게시하여야 합니다.

(5) 기타 장부·서류

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

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1) 수시공시 등

-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한국경제신문에도 공고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항의 변경은 게시, 개별통지, 신문광고 또는 컴퓨터통신을 통한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자산운용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자산운용회사(www.samsungfund.com)·판매회사·자산운용협(www.amak.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1)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률
 - (4)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 (5) 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명령,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6) 자산운용회사의 합병, 분할 또는 영업의 양수도
 - (7) 자산운용회사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수정하는 경우 그 내용
 - (8) 그 밖에 자산운용회사의 재무건전성 또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재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인터넷 게시주소		인터넷 게시주소	
삼성증권(주)	www.samsungfn.com	(주)SC제일은행	www.kfb.co.kr
외환은행(주)	www.keb.co.kr	수협중앙회	www.suhyup.co.kr
(주)대구은행	www.daegubank.co.kr	우리투자증권(주)	www.wooriwm.com
동양종합금융증권	www.tysec.co.kr	(주)전북은행	www.jbbank.co.kr
부산은행(주)	www.pusanbank.co.kr	SK증권(주)	www.priden.com
메리츠종합금융(주)	www.imeritzbank.com		

(2) 의결권 행사

-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의결권행사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①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②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③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①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일전까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내용을 공시할 것
- ②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제5부.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삼성 리서치주식모투자신탁

- 1. 신탁계약기간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해지일까지**
- 2. 종류 증권접투자신탁, 추가형, 개방형, 모자형의 모투자신탁
- 3. 자산운용회사 삼성투자신탁운용(주)
- 4. 최초설정일 등 연혁 2007년 05월 14일 투자신탁 설정
- 5. 주된투자권유대상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만이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투자신탁 이외의 투자자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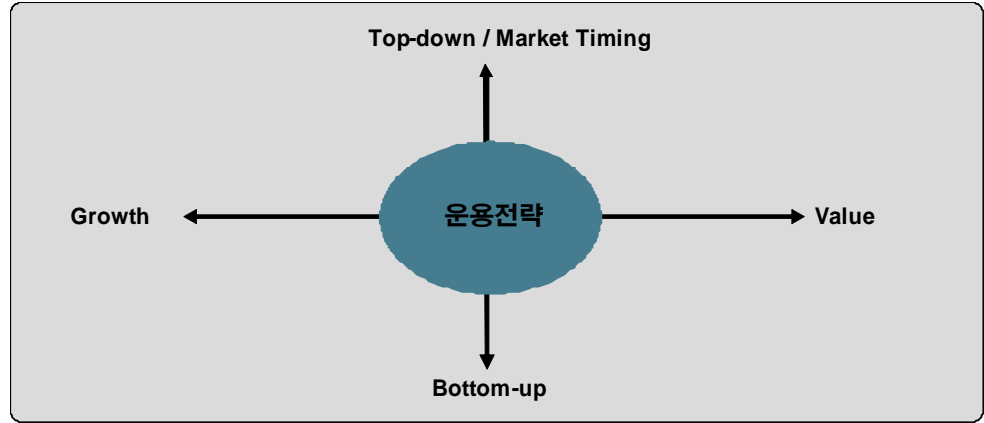
[모자형투자신탁의 구조]

이 투자신탁은 법제140조에 의거한 모자형간접투자기구의 모투자신탁으로써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투자증권등에 간접투자하게 되며,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자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투자신탁 자투자신탁	삼성 리서치주식모 투자신탁	삼성 강국코리 아단기채권모	삼성 퇴직연금 12사모채권
삼성 리서치장기적립식 주식자투자 제1호	100%이하	-	-
삼성 장기주택마련주식 종류형자투자신탁 제1호	100%이하	-	-
삼성 당신을위한리서치 주식혼합종류형자 1호	40%이상 80%이하	60%이하	
삼성 퇴직연금리서치주 식자투자신탁 제1호(DB)	60%이상	-	40%이하
삼성 퇴직연금 리서치40 혼합자투자신탁 제1호	40%이하	-	50%이상

6. 투자전략 □ **주식부문**

- 1) 철저한 Fundamental Research에 바탕을 둔 투자
 - 깊이 있는 Research에 근거한 Bottom-up투자 및 Value 투자를 중요시 합니다.
 - 소수우량주의 비중이 크고, cyclical한 국내시장 특성상 Top-down으로 투자합니다.
 - 성장주에 투자 병행이 가능합니다.



2)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차별화된 Research 및 Risk 관리

- 보유한 주요종목에 대한 5년간의 실적추정과 DCF에 의한 기업가치 평가를 수행합니다.
- 표준화된 실적추정모델과 가치평가 모델로서 기업분석 시행합니다.
- 업종별/종목별 투자한도 관리 및 종목군 별 분산투자등 기업내재가치 변동 위험 관리합니다.

투자 Point

- Business Model
- Value Driver
- 핵심역량
- 경영진의 Quality
- 장기 Vision
- SWOT
- 주주가치 창출여부
(ROE>COE, ROIC>WACC)

가치 평가

- 향후 5년간 실적 세부추정
- P/E, P/B, EV/EBITDA Valuation
- DCF(현금흐름 할인 모형)에 의한 기업가치 평가

□ 채권부문

채권부문은 주로 안정성이 높은 국공채 및 통안채 등으로 운용할 계획이며, 환매금 지급을 위한 유동성 자원 등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7.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① 주식	6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권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함
② 채권	4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채, 지방채, 특수채,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 주식관련사채 및 사모사채 제외)
③ 어음	4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한 어음·채무증서 또는 기업어음(신용등급 A2- 이상)

④	자산유동화 증권	4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⑤	금리스왑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	
⑥	수익증권등	5%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30% 이하	○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 간접투자증권
투자증권대여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투자증권총액의 50% 이하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총액의 100분의 50 이하	
⑦	장내 파생상품	15%이하 (위탁증거금의 합계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션, 주식옵션, 코스닥지수선물, 코스닥지수옵션, CD금리선물, 통안증권금리선물, 국채선물 및 국채선물옵션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 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p>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①, ②, ③, ④, ⑤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아래의 라. 및 마.의 경우에는 투자비율 적용 예외 기간을 15일 이내로 함</p> <p>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p> <p>나.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p> <p>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p> <p>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p> <p>마.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①, ②, ③, ④, ⑤의 투자비율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p>			

8. 투자제한

구분	내용	적용 제외
단기대출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자산운용회사의 이해관계인(법 시행령 제77조 적용)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p>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총액의 40%까지 :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 자산총액의 30%까지 : 지방채증권, 정부투자기관 발행 채권 및 어음, 금융기관(법 시행령 제6조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의 규정 적용) 발행 채권 또는 채무증서 및 어음, 금융기관보증 채권(증권거래법에 의한 공모채권에 한정) 또는 채무증서 및 어음,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금융기관 지급보증 한 것에 한정) 및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 	
동일회사 기초 파생상품 투자	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 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따르는 위험의 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파생상품 투자	<p>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거래에 따르는 위험의 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p> <p>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포함한 투자신탁재산 총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를 초과하는 행위</p>	
투자한도 초과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위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투자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	
후순위채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9. 투자실적 추이

가. 연도별 수익률

기간	1년차 (‘07.05.14 ~ ‘08.03.31)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투자신탁	6.56%	-	-	-	-
비교지수	6.34%				

※ 비교지수 : KOSPI * 0.95 + CD * 0.05

나. 연평균 수익률 추
이

기간	최근 1년 (‘07.05.14~ ‘08.03.31)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07.05.14~ ‘08.03.31)
투자신탁	6.56%				6.56%
비교지수	6.34%				6.34%

10.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및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가 없습니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 부담으로 하게 되며,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수탁회사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합니다. 여기서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의 것들을 말합니다.

1. 투자증권등의 매매수수료
2. 투자증권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 투자증권등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9.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등에 소요되는 비용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다른 자투자신탁의 보수율에 관한 사항>

펀드명	판매 수수료	자산운용 회사	판매 회사	수탁 회사	합계	
삼성 리서치 장기적립식주식자투자신탁 제1호	A클래스	선취 : 1%	0.70%	0.90%	0.03%	1.63%
	C1클래스	-	0.70%	1.70%	0.03%	2.43%
	C2클래스	-	0.70%	1.50%	0.03%	2.23%
	C3클래스	-	0.70%	1.30%	0.03%	2.03%
	Ce클래스	-	0.70%	1.53%	0.03%	2.26%
	Cw클래스	-	0.70%	-	0.03%	0.73%
삼성 장기주 택마련주식종 류형자투자신탁 제1호	A클래스	선취 : 1%	0.60%	0.90%	0.03%	1.53%
	C1클래스	-	0.60%	1.95%	0.03%	2.58%
	C2클래스	-	0.60%	1.66%	0.03%	2.29%
	C3클래스	-	0.60%	1.41%	0.03%	2.04%
	C4클래스	-	0.60%	1.20%	0.03%	1.83%
	C5클래스	-	0.60%	1.02%	0.03%	1.65%
삼성 당신을 위한리서치주 식혼합종류형 자 1호	A클래스	선취: 0.7%	0.54%	0.66%	0.03%	1.23%
	C1클래스	-	0.54%	1.26%	0.03%	1.83%

	Cw클래스	-	0.54%	0.00%	0.03%	0.57%
삼성 퇴직연금리서치주식자투자 제1호(DB)		-	0.41%	0.95%	0.03%	1.39%
삼성 퇴직연금 리서치 40혼합자투자 제1호		-	0.23%	0.55%	0.02%	0.80%

11. 수익자총회에 관한 사항 (수익자총회의 구성 및 권한)

수익자총회는 법령 및 신탁약관에서 정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총회의 운영)

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의결권등)

의결권은 수익증권 1좌마다 1개로 합니다.

자산운용회사는 각 자투자신탁의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자투자신탁의 수익자들의 의결권 행사 내용에 비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2. 삼성 강국코리아단기채권모투자신탁

- 1. 신탁계약기간
- 2. 종류
- 3. 자산운용회사
- 4. 최초설정일 등 연혁
- 5. 주된투자권유대상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채권형, 추가형, 모자형의 모투자신탁

삼성투자신탁운용(주)

2007년 05월 29일 투자신탁 설정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만이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투자신탁 이외의 투자자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할 수 없습니다.

[모자형투자신탁의 구조]

이 투자신탁은 법제140조에 의거한 모자형간접투자기구의 모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투자증권등에 간접투자하게 되며, 이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자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투자신탁	모투자신탁	강국코리아단기채권모
삼성 강국코리아단기채권종류형자투자신탁 제1호		100%이하
삼성 강국코리아단기채권종류형자투자신탁 제2호		100%이하
삼성 당신을위한리서치주식혼합종류형자투자신탁 제1호		60%이하

6. 투자전략

□ 기본운용 전략

- 국공채 및 우량 은행채등에 투자하여 크레딧 리스크 최소화합니다.
- 단기 시장 움직임에 민감한 듀레이션의 낮은 변동보다 중기적 금리 추이

- 에 따른 적정 Duration Level 설정을 목표로 운용합니다.
- 여러 만기 구간에 대한 다양한 Spread 분석을 통해 Risk 대비 가장 Return이 높은 최적 구간 포착 합니다.
- 파생상품의 투자(CD금리선물, 국채선물)는 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위험관리수단으로 투자하며, 기초 자산의 가격 움직임에 따라 매매차익거래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 상기의 투자전략은 시장상황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① 채권	6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채증권, 지방채, 통화안정증권 및 특별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채권 ○ 사채권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
②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유동화에 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③ 어음	4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 채무증서 ○ 기업어음(신용평가등급 A2- 이상)
④ 금리스왑거래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
파생상품	15% 이하 (위탁증거금의 합계액)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CD금리선물, 통안증권금리선물, 국채선물 및 국채선물옵션
수익증권등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 이하	
투자증권의대여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투자증권총액의 50% 이하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 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①, ②, ③, ④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아래의 라. 및 마.의 경우에는 투자비율 적용 예외 기간을 15일 이내로 함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위반하게 되는 경우		

8. 투자제한

구분	내용	적용 제외
단기대출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자산운용회사의 이해관계인(법 시행령 제77조 적용)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동일종목 투자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투자증권(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 중 주식을 제외한 투자증권은 동일종목으로 간주)에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 ○ 자산총액의 100%까지 :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 자산총액의 30%까지 : 지방채증권, 정부투자기관 발행 채권, 금융기관(법 시행령 제6조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의 규정 적용) 발행 채권 또는 채무증서, 금융기관보증 채권(증권거래법에 의한 공모채권에 한정) 또는 채무증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금융기관 지급보증 한 것에 한정)	
동일회사 기초 파생상품 투자	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 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따르는 위험의 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파생상품 투자	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거래에 따르는 위험의 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포함한 투자신탁재산 총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를 초과하는 행위	
투자한도 초과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위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투자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	
후순위채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9. 투자실적 추이

가. 연도별 (연환산) 수익률

기간	1년차 (‘07.05.29 ~ ‘08.03.31)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투자신탁	4.26%	-	-	-	-
비교지수	4.46%				

※ 비교지수 : KOSPI * 0.95 + CD * 0.05

나. 연평균 (연환산)수익률 추이

기간	최근 1년 (‘07.05.29~ ‘08.03.31)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07.05.29~ ‘08.03.31)
투자신탁	4.26%				4.26%
비교지수	4.46%				4.46%

11.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및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가 없습니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 부담으로 하게 되며,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수탁회사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합니다. 여기서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의 것들을 말합니다.

1. 투자증권등의 매매수수료
2. 투자증권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 투자증권등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9.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등에 소요되는 비용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다른 자투자신탁의 보수율에 관한 사항>

모투자신탁 자투자신탁		삼성 강국코리아단기채권모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	수탁회사	합계
삼성 당신을위한리서치주식혼합종류형자 1호	A클래스	0.54%	0.66%	0.03%	1.23%
	C1클래스	0.54%	1.26%	0.03%	1.83%
	Cw클래스	0.54%	0.00%	0.03%	0.57%
삼성강국코리아단기채권종류형자투자신탁 제1호	A클래스	0.21%	0.20%	0.03%	0.44%
	C클래스	0.21%	0.49%	0.03%	0.73%
삼성강국코리아단기채권종류형자투자신탁 제2호		0.21%	0.49%	0.03%	0.73%

14. 자산평가

간접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유가증권시장등 발표하는 가격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비상장채권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	
외화표시 유가증권인 상장주식 및 상장채권	그 유가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유가증권시장의 최종시가
장의파생상품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평가방법(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에 따라 계산된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15 수익자총회에 관한 사항

(수익자총회의 구성 및 권한)

수익자총회는 법령 및 신탁약관에서 정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총회의 운영)

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의결권등)

의결권은 수익증권 1좌마다 1개로 합니다.

자산운용회사는 각 자투자신탁의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자투자신탁의 수익자들의 의결권 행사 내용에 비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참 고 **펀드 용어 정리**

용 어	내 용
개방형 (간접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금리스왑	금리스왑은 금리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때 원금은 바꾸지 않고 서로 이자지급의무만을 바꾸며, 금리스왑은 보통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레버리지효과	파생상품을 이용한 고위험의 투자방법으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주가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물환거래	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일정기간 내에 일정액의 외국통화를 일정한 환율로 매매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거래로 환헤지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됩니다.
설정	신탁약관에 의거, 수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수탁회사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성과보수	현행 법은 불특정다수의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펀드(공모펀드)의 경우 자산운용회사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 보수(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 혹은 투자일임계약의 경우 약관(계약)에 따라 성과보수의 수취가 가능합니다. 펀드매니저가 성과보수가 있는 사모펀드·투자일임계약과 성과보수가 없는 공모펀드를 함께 운용함에 따라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등의 투자수익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투자노력을 기울이는 등 이해상충발생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익자총회	펀드의 수익자 회의를 일컫는 말입니다. 2003년 10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제정되면서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개념입니다. 수익증권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자산운용회사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총 수익증권 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열리는데, 상정된 안건은 출석한 수익자 <u>의결권</u> 의 3분의 2 이상과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만약 이 의결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증권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자산운용회사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투자신탁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수탁고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자산운용회사가 고객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지칭합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사채권자에게 사채 발행 이후에 기채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자산운용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자산운용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실채권이나 직접 매각하기 어려운 부동산 등 담보로 맡기고 ABS를 발행해 쪼개서 판매함으로써, 자금 조달의 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특수사채의 일종으로,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종류형(간접투자기구)	철상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 방법은 동일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증서로, 만기에 특정종목의 주가나 주가지수를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상품으로 옵션과 유사합니다. 살 수 있는 상품은 `콜워런트`, 팔 수 있는 상품은 `풋 워런트`입니다.
주식형(간접투자기구)	약관(정관)상 주식에 간접투자재산의 60%이상을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채권형(간접투자기구)	약관(정관)상 채권에 간접투자재산의 60%이상을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혼합형(간접투자기구)	투자재산에 60%미만을 채권에, 60%미만을 주식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증권간접투자신탁	간접투자재산의 40% 이상을 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추가형(간접투자기구)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 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 매입 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 권유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해지	투자신탁(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투신제도상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투신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

	습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간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환매조건부채권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환헤지	해외펀드는 대부분 달러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선물환 계약(미리 정해놓은 환율을 만기 때 적용하는 것) 등을 이용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제거하는 환헤지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 최초매수시 상담 및 고객확인란

계좌번호		매수금액	금	원정 (₩)
펀드명	삼성 당신을 위한 리서치주식혼합종류형자투자신탁 제1호			
상품구분	<input type="checkbox"/> 일반 <input type="checkbox"/> 세금우대 <input type="checkbox"/> 비과세 <input type="checkbox"/> 생계형 <input type="checkbox"/> 기타()			재투자부 <input type="checkbox"/> 찬성 <input type="checkbox"/> 반대
저축형태	<input type="checkbox"/> 임의식 <input type="checkbox"/> 거치식 <input type="checkbox"/> 적립식 <input type="checkbox"/> 자유적립식	저기 축간 ()개월	저금 축액 ₩	
펀드유형	<input type="checkbox"/> MMF <input type="checkbox"/> 채권형 <input type="checkbox"/> 주식형 <input type="checkbox"/> 채권혼합형 <input type="checkbox"/> 주식혼합형	매수 결제 <input type="checkbox"/> 당일 <input type="checkbox"/> 익일	환매 결제 <input type="checkbox"/> 당일 <input type="checkbox"/> 3일 <input type="checkbox"/> 4일 기타(일)	
기타사항	<i>연금저축, 부가서비스, 보험서비스, 웰스플랜 상품선택사항 등 기타사항작성</i>			
투자설명서 통보처 (유선신시 작성)	<input type="checkbox"/> 교부 <input type="checkbox"/> e-Mail <input type="checkbox"/> 우편자택 <input type="checkbox"/> 우편직장	처리 시각	고 객 연 락 처	

판매일 : _____

판매회사 및 점포 : _____ 지점

판매직원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투자자 확인

○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아래의 내용을 밑줄친 곳에 똑같이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 들었음.

(투자설명서를) _____ (그 주요내용을) _____.

년 월 일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